

연구노트 작성 Q&A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관련하여 발명의 완성만 되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을 뿐 그 발명을 제품화 하지는 않은 경우에도 “선사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선사용권이란 특허권자의 출원 이전에 독자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하여 이미 발명을 사업으로서 실시하고 있거나 사업으로서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특허권에 해당하는 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주신 부분이 “사업으로서 실시할 준비”로 인지하여 포함된다면 선사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2. 연차별로 연구노트를 구분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권에 1~4차년도를 쭉 작성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 다년차 과제인 경우, 연차별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가급적 구분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노트 작성 Q&A

3. 서면연구노트 양식의 웹주소를 알려주세요.

👉 <https://www.e-note.or.kr/paper/noteTemplateList.do>

4. 연구노트의 확인자, 점검자는 각 기관의 연구개발 책임자인가요? 아니면 작성자 이외의 3자인가요?

👉 기록자 이외의 제3자 누구나 가능합니다(동료 연구자, 선후배 연구자 등). 다만 연구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3자에는 연구책임자도 포함됩니다.

5. 단계평가 시 기존에는 연구노트가 연구 종료 후 성실성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되었으나 2021년 12월부터 단계평가 과정에서 수행과정 평가에 반영된다고 하셨는데 2021년 12월 이전에 시작한 과제에도 적용되는 사항인가요?

👉 2021년 12월에 KISTEP의 평가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것이지, 법령상 혁신법이 도입된 2021년 1월부터 평가 체계는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과제는 성과평가와 과정평가를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KISTEP에 문의 바랍니다.

연구노트 작성 Q&A

6. 연구노트와 관련하여 PPT 및 엑셀로 정리된 내용을 출력하여 서면 연구노트에 부착이나 같이 제본하여 보관하여도 되나요?

☞ 출력물을 부착하는 것은 가능하나 정리된 내용을 모아서 책자로 제본하는 형태는 연구노트로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비된 연구노트에 부착물의 형태로 출력물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7.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으로 나뉘서 연구과제 진행중인데요, 각 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상으로 연구노트는 연구개발기관 마다 각각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8.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코딩이 되면 바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발명처럼 특허출원이 필요 없으니까요.

☞ 실질적인 권리행사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또한 저작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프로그램 등록제도를 확인 바랍니다.

연구노트 작성 Q&A

9. 참여연구원이 연구도중 퇴사를 했는데 이럴 때 연구노트를 이어서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퇴사 이전까지 작성한 것만 놔두고 제출해도 되는지요?
- ☞ 퇴사한 연구원의 연구 내용을 이어서 다른 연구자가 수행한다면 연구노트를 이어서 작성하되,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연구노트 관리자 관점에서는 퇴사 시점까지 기록된 연구노트는 반납하여 보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